

제 1830 호
1994. 6. 20.

발행인: 서울특별시장 이원준
편집인: 공보관 김우석
전화: 731-6111~3
인쇄: 한국컴퓨터산업(인제)주식회사
전화: 273-8111~3

시 보

차 례

● 훈 령	
제 798 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	3
● 고 시	
제 1994-198 호 사료성분등록	17
제 1994-200 호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변경결정지적승인	19
● 공 고	
제 1994-199 호 KS표시정기치분공고	24

(이면계속)

람										
람										

1. 시 공무원은 반드시 읽어야 한다.
2. 시보는 공문서로서의 효력을 갖는다.

서울특별시

“서울 600년 새로운 탄생”

제 1994-200 호	사회회부의안전광고	24
제 1994-206 호	자동차등록번호포의봉인장치심사신청광고	24
● 구 고 시		
제 94-28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송파)	25
제 1994-41 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성동)	25
제 1994-19 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변경인가(중구)	25
● 구 공 고		
제 1994-122 호	도시계획사업시행(공원조경)사업과지정(중구)	26
제 1994-129 호	하천부지점용허가(서초)	26
제 1994-117 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성북)	27
제 1994-190 호	전문건설업면허실효(서초)	27
● 사업소고시		
제 68 호	하천점용허가(한강관리사업소)	28
● 정 정 계 재		
제 1827 호	시보 "공문지행" 내용 중 일부정정	28
● 인 사 발 령		

훈 령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을 다음과 같이 발령한다.

1994. 6. 20

서울특별시장 이원중 ⑩

◎서울특별시훈령제 798호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규정

제1장 총 칙

제1조(목적) 이 규정은 서울특별시 자치구 환경미화원의 인사관리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환경미화원의 구분)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지역환경미화원·가로환경미화원·공중변소관리환경미화원·기타 환경미화원으로 구분한다.

제3조(적용범위) 이 규정은 자치구에 근무하는 환경미화원을 대상으로 한다.

제2장 인사위원회

제4조(기능)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자치구에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이하 "인사위원회"라 한다)를 두며,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환경미화원의 채용에 관한 사항
2. 환경미화원의 순환근무에 관한 사항
3. 환경미화원의 상벌 등 인사운영에 관한 사항(징계처분의 경우는 해고에 한함)
4. 기타 위원장이 부의하는 사항

제5조(구성) 인사위원회는 자치구 부구청장을 위원장, 시민국장을 부위원장으로 하고 위원장이 임명하는 4인이상 6인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환경미화원 대표 1명을 당연위원으로 임명하여야 하며, 청소부서 담당계장을 간사로 하여야 한

다.

제6조(운영) 회의소집·의결 등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인사위원회에서 정하는 바에 의한다.

제3장 채용시험

제7조(시험방법) ①환경미화원의 채용시험은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방법에 의한다.

1. 서류심사: 당해 직무수행과 관련한 경력사유가 없는지를 심사
2. 면접시험: 당해 직무수행에 필요한 능력 및 적격성을 점정

②채용시험의 시기·회수·인원 등은 직정한 인원관리를 위하여 임명권자가 정하는 바에 의한다.

③채용시험 합격자는 별지 제1호서식에 의한 환경미화원 검정순위명부에 등재하고 결원보충시 순위별로 임명하여야 한다.

제8조(평가기준) 시험의 평가기준은 인사위원회에서 별도로 정하되, 다음 각호의 사항을 반영하여야 한다.

1. 투정한 국가관 및 대민봉사자로서의 사명감
2. 신체요건이 청소업무를 원활히 수행할 수 있는 자
3. 서울특별시 장기거주자 및 해당구 관내거주자 우선권 부여

제9조(채용공고) 지역 홍보매체(구·동 게시판 등)를 활용하여 시험 10일 이전에 다음 각호의 사항을 공고하여야 한다.

1. 응시자격 및 구비서류
2. 시험의 일시·장소·방법 등

제10조(응시자격) 환경미화원 시험 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추어야 한다.

1. 만 20세 이상으로 신체 건강한 자(병역필 또는 면제자)
2. 시험 공고일 현재 서울특별시에 주민등록을 필한 자

<p>3. 기타 임명권자가 정하는 요건</p> <p>제11조(제출서류) 환경미화원 시험응시자는 다음 각호의 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응시원서 1부(별지 제2호서식) 2. 주민등록초본 1부 3. 기타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p>제12조(우선채용)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순직한 자 또는 공상으로 인해 퇴직한 자 및 정년퇴직자의 가족이 환경미화원으로 취업할 경우에는 결격사유가 없는 한 결원으로 인한 신규채용시 제7조제3항의 임명순위명부 순위에 불구하고 우선채용할 수 있다.</p> <p>제4장 인사관리</p> <p>제13조(임명권자) 환경미화원은 구청장이 임명한다.</p> <p>제14조(임명장)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으로 신규임명된 자에 대해 별지 제3호서식에 의한 임명장을 수여하여야 한다.</p> <p>제15조(결격사유) 제7조제3항의 임명순위명부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호에 해당되는 자는 환경미화원으로 임명할 수 없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지방공무원법에 의한 결격사유가 있는 자 2. 환경미화원으로 근무하다 징계처분에 의해 해임된 자(자치기간 해임사항 통보) 3. 제18조제2항의 신체검사 결과 질병 등으로 직무수행이 어렵다고 인정되는 자 <p>제16조(정원관리) 구청장은 지역청소여건 등을 고려하여 적정한 인원관리를 하여야 한다.</p> <p>제17조(결원보충) 환경미화원의 결원보충은 신규임명의 방법에 의한다.</p> <p>제18조(임명구비서류) 환경미화원 채용시험에 합격한 자는 다음 각호의 구비서류를 제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인사기록관리용 명함판 사진 2매 	<ol style="list-style-type: none"> 2. 구청장이 지정하는 국·공립병원, 보건소에서 발급하는 신체검사서 1부 3. 기타 임명권자가 지정하는 서류 <p>제19조(인사기록카드)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별지 제4호서식에 의한 개인별 환경미화원 인사기록카드를 작성, 근무명령 사항 등을 기록·관리하여야 한다.</p> <p>제20조(출근부) ①환경미화원의 일일근무실태를 확인하기 위하여 소속부서(구·동 등)에 별지 제5호서식에 의한 환경미화원 출근부를 비치·관리하여야 한다.</p> <p>②환경미화원의 출근 등 복무사항은 소속부서장이 매일 확인하여야 한다.</p> <p>제21조(교육) 소속 환경미화원에 대해 효율적인 청소실시와 대민봉사자모시의 자세확립을 위하여 다음 각호에서 정하는 정기교육을 실시하여야 한다.</p> <ol style="list-style-type: none"> 1. 부구청장 : 연 2회(상·하반기 각 1회) 2. 소속부서장(청소과장·동장 등) : 월 1회 3. 기타 필요시 <p>제22조(증명서 등의 발급) ①재직중인 환경미화원이 재직증명서의 발급을 요청할 때는 인사기록카드에 의하여 재직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②재직 및 퇴직 환경미화원이 경력증명서 등의 제증명 발급을 요청할 때는 인사기록카드 등 관계공부에 의해 증명서를 발급하여야 한다.</p> <p>③제1항 및 제2항의 제증명발급 서식은 서울특별시 지방공무원 관계규정을 준용한다.</p> <p>제5장 순환근무</p> <p>제23조(실시시기) 구청장은 환경미화원의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격년 단위로 순환근무를 실시하되 시기는 구청장이 정하는 바에 의한다.</p>
---	---

제24조(실시방법) ①순환근무 실시를 위하여 다음 각호에 의한 순환근무명부를 작성하고, 순환근무 실시 1개월 이전에 소속 환경미화원에게 공시하여야 한다.

1. 전 환경미화원에 대하여 일일일차순 등의 방법으로 일련번호를 부여하되, 지역 및 가로환경미화원·공변관리원·기타환경미화원 등으로 구분관리할 수 있다. 다만, 정년·사고 등으로 결번 발생시는 차기순환시 바로 뒷번호를 앞으로 당겨야 한다.
2. 순환근무에 적정하도록 정소구역을 지역(행정동 순위별)·가로·집하장 및 기동대 등의 순위별로 일련번호를 부여한다.

②순환근무는 부여된 일련번호 순으로 실시하며 가로에서 지역, 지역에서 가로 배치를 원칙으로 하되, 집하장 및 기동대 근무요원 등은 가로에서 근무한 것으로 본다.

③가로에서 근무한 자는 차기순환시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지역으로 배치되도록 하여야 하며, 가로보다 지역미화원수까지 적을 때에는 그 반대로 배치하여야 한다.

④제1항 내지 제3항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구청장은 지역 청소여건 등을 고려하여 별도의 순환근무지침을 정하여 시행할 수 있다.

제6장 부 무

제25조(임무) 환경미화원의 주요임무는 다음 각호와 같으며 환경미화원은 책임완수를 위하여 최선을 다하여야 한다.

1. 지역환경미화원 : 담당구역의 폐기물 및 재활용품의 수거
2. 가로환경미화원 : 담당구간의 도로(인도 포함) 청소 및 재활용품의 수거
3. 공변관리인 : 공중변소의 청결유지 및 부속시설물의 관리

4. 기타환경미화원 : 각 개인에게 부여된 임무 수행

제26조(의무) 환경미화원은 지역주민에게 항상 친절·공정하게 대하여야 하며 담당 공무원의 지시에 따라 맡은바 직무를 신속·정확·성실하게 수행하여야 한다.

제27조(결근제) ①환경미화원이 질병·사고 등으로 출근하지 못할 때에는 당일 정오까지 소속부서장에게 결근신고를 하여야 한다.

②질병으로 인하여 3일 이상의 결근시에는 의사의 진단서를 첨부하고 기타의 사유로 3일 이상 결근시에는 사유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제28조(복장) 환경미화원은 작업서에 지정된 복장을 착용하여야 한다.

제29조(청소용구 등의 관리) 환경미화원은 선량한 관리자로서의 주의를 다하여 다음 각호에 청소 용구를 취급·보관·관리하여야 한다.

1. 수하차는 항상 깨끗이 하고, 파손된 수하차는 즉시 수리 사용
2. 청소용구는 반드시 지정 장소에 보관하고 경유면적은 최소화
2. 마도된 빗자루 등은 사전에 보고하여 수령
4. 청소용구의 방치로 주변환경과 미관을 저해하는 일이 없도록 주의

제30조(지역정소) 지역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담당구역의 폐기물은 특별한 사유가 없는 한 2일에 1회 이상 수거
2. 폐기물은 주택 및 사업장의 문진 또는 지정된 배출용기에서 수거
3. 폐기물 수거시 골목길 등 차량전입이 곤란한 지역은 수하차 등의 편리한 용구를 사용하여 수거
4. 수하차에 과다적재하여서는 아니되며

운반중 폐기물이 비산되지 않도록 주의
 5. 작업중 수하차는 지정된 위치에 두어
 통행에 불편을 주지 않도록 주의
 제31조(가로정소) 가로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가로정소는 07:30분까지 1회 작업 완
 료 및 1일 3회이상 청소 실시
2. 차도와 보도의 경계석 측구에 모래가
 쌓이지 않게 쓸어 내고 빗물받이에 폐
 기물이나 토사를 투입하여서는 아니되
 며, 겨울철에는 빗물받이가 결빙되지
 않도록 주의
3. 차도에서 쓸어 모은 토사나 겨울철 얼
 화알갱이 뿌려진 눈이 가모수분 등에
 투입되지 않도록 주의
4. 모퉁 청소시에 쓸어 모은 토사 등이
 하천에 유입되지 않도록 주의
5. 고가차도와 육교 청소시에는 토사가
 밑으로 떨어지지 않게 주의하고 계단·
 교각마다 들레·분리철책·램프 밑의 토
 사까지 제거
6. 가로휴지통의 내·외부 청소는 1일 2회
 이상 실시하고, 지정 규격품 외의 휴지
 통이 설치되었거나 파손된 휴지통이 있
 을 때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

제32조(적화장관리) 적화장을 관리하는 환
 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
 야 한다.

1. 적화장은 수시로 청소를 실시하여 주
 변환경을 깨끗이 유지
2. 작업시에는 먼지 등이 날리지 않도록
 비산방지에 주의
3. 5월 1일부터 10월 31일까지는 매일 1
 회이상 소독을 실시하고, 작업종료 후
 에는 매일 물청소 실시
4. 작업시에는 적화시간을 최소한으로 단
 축하여 인접 지역주민의 피해를 최소화
5. 수하차 등의 용구는 철서 있게 정돈하

고, 당일 수거 폐기물은 당일 적화 완
 료

제33조(공중변소관리) 공중변소관리 환
 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준수하여야
 한다.

1. 변소를 이용하는 시민에게는 항상 친
 절히 대하여야 하며, 근무시에는 지정
 된 복장을 착용
2. 1일 5회 이상 변소 내·외부를 청소하
 여 항상 청결한 상태를 유지
3. 시설물의 보존 및 관리에 힘써야 하
 며, 손괴시에는 담당공무원에게 즉시
 보고하고 현장에서 보수가 가능한 사항
 은 즉시 보수하여 이용시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
4. 분뇨수거 및 정화조 청소일정을 사전
 에 알지하여 적기에 오물수거 실시
5. 부득이한 사유로 근무지를 이탈할 때
 에는 담당공무원의 허가를 득하여야 하
 며 시설물 도난 및 훼손방지를 위한 제
 반조치 확행
6. 변소의 내·외부 소독은 4월부터 9월까
 지는 주 3회 이상, 10월부터 다음해 3
 월까지는 주 1회 이상 실시하여 악취
 발생과 쥐·파리·모기 등의 발생·번식을
 방지
7. 변소 내에는 휴지통 및 두루말이 화장
 지를 비치하여 공중변소를 이용하는 시
 민에게 불편이 없도록 조치
8. 별지 제6호서식에 의한 공중변소관리
 일지를 매일 기록·유지

제34조(안전관리)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
 에 의한 안전관리 사항을 준수하여 사고
 를 예방하여야 한다.

1. 청소 작업시에는 반드시 지정된 안전
 장구 착용
2. 압축차량에 의한 수거 작업시에는 압
 축 회전편이 손이 끼이지 않도록 주의

3. 청소작업 주변에 위해 요인이 있을 때에는 안전대를 설치하는 등 미리 안전을 확보한 후 청소 실시

4. 고가도로 등 차량전용도로의 청소작업 시에는 차량이나 경광등으로 안전조치를 위한 후 청소 실시

5. 음주 등 사고의 요인이 될 수 있는 제반사항에 주의를 다하여 안전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주의

제35조(주민제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사항을 담당구역 주민에게 꾸준히 권장하여야 한다.

1. 폐기물은 재활용 가능한 것과 비려야 할 것으로 구분하여 배출토록 하고 악취 및 오수가 발생하는 폐기물은 반드시 비닐봉지에 넣어 버리도록 지도
2. 내집 앞·내집포 앞은 주민 스스로 자율정소를 실시할 수 있도록 계도
3. 기타 폐기물의 감량화 등 지역주민이 실천해야 할 사항을 계도

제36조(신고) 환경미화원은 근무중에 금품 등을 습득하거나 위험 또는 이상한 물건을 발견하였을 때에는 인근 파출소에 지체없이 신고하고, 이를 담당 공무원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제37조(금지행위) 환경미화원은 다음 각호의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1. 주민에게 금품을 요구하는 행위
2. 과다봉사, 차등수집 등 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3. 도급수거 행위
4. 공무원에게 금품을 주거나 향연을 베푸는 행위
5. 폐기물을 무단으로 소각하는 행위
6. 담당공무원의 허가없이 근무지를 무단 이탈하는 행위
7. 기타 사회질서를 저해하는 행위

제38조(벌칙) 환경미화원이 이 규정을 위

반하였을 경우에는 벌표에 의한 환경미화원 징계처분기준에 따른다. 다만, 이 기준에 명시되지 아니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이 기준 중 가장 유사한 사항에 따라 처분한다.

제39조(보칙) 환경미화원의 근무시간·시간외 근무·유급휴일·유급휴가·정년·퇴고의 예고·임금·복리후생(제수당·전감진단·퇴부·안전장구·각종보상·퇴직금) 등은 노사단체 협약에 의한다.

부 칙

①(시행일) 이 규정은 1994년 7월 1일부터 시행한다.

②(경과조치) 이 규정 시행일 이전 근무중인 환경미화원은 이 규정에 의해 임명·관리된 것으로 보되, 이 규정 시행과 동시에 종전의 서울특별시환경미화원인사및복무지침은 이 규정으로 대체한다.

<별지 제1호서식>

환경미화원임명순위명부

연번	성명	주민등록번호	성별	재용시월 합계일자	신원조사				임명		비고
					의뢰일자	확보일자	확보내용	임명가부	임명일자	근부부처	

33-8

〈별지 제2호서식〉 (앞면)

응 시 원 서

○○ 구 청 장 귀하

① 나는 19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에 응시하고자 원서를 제출합니다.

※ 본인은 응시자격에 적합한 뿐 아니라 아래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으며 만일 시험 합격 또는 임명 후에 허위사실이 판명되었을 때에는 합격 또는 임명의 취소처분에도 이의를 제기하지 아니할 것을 서약합니다.

19 년 월 일 성명 (인)

②주 소			③전화번호		
④최종출신학교	(졸업, 중퇴)			⑤자 격 중	
⑥경 력 (최 근)	근 부 기 간	근 부 처 명	담 당 입 부		
	~				
⑦병 역 관 계	⑧서울시전입		⑨응시구전입		
⑩응시※번호	⑪성 명	(한글)	⑫성별	남	⑬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⑭주민등록 번호		⑮연령 만 세		
계					
인					

응 시 표

① 19 년 월 일 환경미화원 공개경쟁채용시험

⑩응시※번호	⑪성 명	(한글)	⑫성별	남	⑬사 진 (반명함판)
		(한자)		여	
	⑭주민등록 번호		⑮연령 만 세		

210mm × 297mm 인책용지(2급)60g/m²

(별첨)

응시원서작성요령

※ 응시원서(응시표)는 자필로 다음 요령에 의하여 빠짐없이 기재하시기 바랍니다.

- ① 시험일자 : 당해 시험시행 공고에 따라 그 시험 시행일자를 기재할 것.
- ② 주소 : 현지 실제 거주하는 곳을 기재할 것.
- ③ 전화번호 : 시험 응시 본인과 연락 가능한 전화번호를 기재할 것.
- ④ 최종출신학교 : 최종출신학교, 학과 및 학년을 기재하고, 수험구분중 해당란에 ○표할 것.
- ⑤ 자격증 : 운전면허 등 국가기관 공인 자격증 내역을 기재할 것.
- ⑥ 경력 : 가장 최근 근무한 직무 또는 사회경력을 기재할 것.
- ⑦ 방역관계 : 방역사형을 해당란에 ○표할 것(미필자는 응시자격 없음).
- ⑧ 서울사전입 : 주민등록상 서울시 최초 전입연월일(계속거주)을 기재할 것.
- ⑨ 응시구권입 : 주민등록상 응시구 최초 전입연월일(계속거주)을 기재할 것.
- ⑩ 응시번호 : 응시원서 및 응시표의 응시번호란은 기재하지 말 것.
- ⑪ 성명 : 한글과 한자로 병서하여 기재할 것.
- ⑫ 성별 : 해당 성별란에 ○표할 것.
- ⑬ 주민등록번호 : 주민등록증에 의한 주민등록번호를 기재할 것.
- ⑭ 연령 : 주민등록증에 의해 시험예정일 현재 만연령을 기재할 것.
- ⑮ 사진 : 최근 6월 이내에 촬영한 반명함판(3.5cm×4.5cm) 탈모, 상반신 사진 (동일원관의 것으로 얼굴부분이 커야 함)을 붙여 붙일 것.

(별지 제3호서식)

계 호

업 명 장

성 명 :

주민등록번호 :

귀자름 환경미화원으로 일명함

19 년 월 일

○○구 청 장 (직인)

210mm × 297mm 인쇄용지(복합)120g/㎡

<별지 제4호서식>

(앞면)

한글미하원 인사기록카드

소속										일명일자			
성명	한글	성 명		주민등록번호	주소				전화번호		호주성명 및 관계		
	한자	남	여								의()		
사 인 (영합관)	개인	신장	체중	시 력			혈액형	진장상태	종 교	화 력	외국출신학교명		
	신장			좌		우							
	병역	미필	역종	병 과	지 급	군 민		입대일	재대일	복 부 기 간			
	신체									년 월			
구분	관계	성 명	주민등록번호	학 력	직 업		구분	연월일	종 류		시 행 칙		
가 족 관 계							가 의 중 상 별 관 계						

제 1830 호

시

부

1991. 6. 20

257mm x 364mm 인쇄용지(착용) 150g / m²

(뒷면)

제 1330 호

시

부

1994.6.20

정 령 발령 사항					
근무기간(발령일자)	근무처(근무부서)	직 위	담당 업무	기 타 사 랑	기록자인
본 인	본포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서약함 19 년 월 일 성 명 : (인)		소 속 기 관 장	본포 기재사항은 사실과 상위 없음을 확인함 19 년 월 일 ○○구청장 (인)	

33-13

<별지 제5호서식>

199 년 월분

환경미화원출근부

소속: ○○구청 ○○동(가호)

성명:

구분	1	2	3	4	5	6	7	8	9	10	11	12	13	14	15		결근	유급	출근	비고
	16	17	18	19	20	21	22	23	24	25	26	27	28	29	30	31	일수	휴일	일수	
출근자																				
인																				
확인자																				
인																				
출근자																				
인																				
확인자																				
인																				

제 1830 호

시

부

188

1994.6.20

33-11

<별지 제6호서식> 19 년 월 일 요일 공중변소관리일지		결		담당	계장	과장	
		재					
공중변소명칭		관리인성명				(인)	
간부사건		이용자수				명	
청소 사항 일시시간	횟수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소독사항 (시간및약품명기록)							
시설 보수사항							
공변수거확인 (정화조분뇨탱크)		수거시간	수거차량(차량번호)		수거량	수거확인 (인)	
기타사항		순찰자		순찰지적사항		비고	
210mm×297mm 신문용지 54g/m ²							

13-15

제 1830 호

시

부

1994.6.20

(별표)							
환경미화원징계처분기준							
구 분	위 반 사 항	처 분 기 준					
		주의	경고	정 직			해고
				1일	2일	3일	
발 생 시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 이상의 형 확정자					1회	
	무고한 부서 등 총파를 해하는 자					1회	
	조장 등의 계도를 임의로 만든 자					1회	
월 단 위	자 참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지시사항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담당구역 청소불량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폐기물을 하수구, 빗물받이에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중위손상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광비잔리 불결사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수거기피 및 정일 수거불이행(누적)		1회	2회	3회	4회	5회
	무계결근		1회	2회	3회	4회	5회
	복장위반		1회	2회	3회	4회	5회
	안전장구 미착용, 안전의무 불이행		1회	2회	3회	4회	5회
	근무중 음주행위			1회	2회	3회	4회
년 단 위	근무태만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근무지 무단이탈	1회	2회	3회	4회	5회	6회
	지역주민으로부터 지탄을 받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도급행위		1회	2회	3회	4회	5회
	답요구			1회	2회	3회	4회
	근무중 주민 등에게 행패			1회	2회	3회	4회
	폐기물 소각행위			1회	2회	3회	4회
	수거한 폐기물을 무단투기하는 행위			1회	2회	3회	4회
	도박 또는 사행행위를 조장한 자				1회	2회	3회
	부정한 목적으로 금품 수수 또는 거출하는 행위					1회	2회
자기수거처 폐기물수거행위 및 청탁					1회	2회	
처분등의 기 준	1. 종합처분 : 개개의 처분결과(월단위, 년단위)를 합산처분						
	가. 주의처분 년 16회 이상 : 해고						
	나. 경고처분 년 8회 이상 : 해고						
	다. 정직일수에 관계없이 정직처분 년 4회 이상 : 해고						
	라. 정직횟수에 관계없이 정직일수 년 7일 이상 : 해고						

처분등의 기준 2. 동시에 수개의 위반행위가 경합시에는 그중 중한 처분기준에 의하여 주의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경고 1회, 경고처분 2이상 경합시에는 징적 1일, 징적처분 경합시는 정적일수를 합산하여 처분한다.
3. "년", "월"은 봉상사용 력을 기준으로 한다.

〈제정이유 및 주요골자〉

- 제정이유
현재 자적구에서 운영하고 있는 환경미화원 인사 및 복무지침을 개선·보완하여 통일된 관리규정을 제정·시행함으로써 보다 체계적인 관리를 통해 청소행정의 발전을 도모하고 일선 환경미화원의 사기진작에 기여하고자 함.
- 주요골자
가. 환경미화원의 채용·순환근로·상변 사항 등 효율적인 인사관리를 위하여 자적구 환경미화원 인사위원회를 운영함(안 제4조).
나. 폐기를 수거 등 청소업무의 원활한 수행을 위하여 환경미화원의 임무·근무요일·징계기준 등 제반 복무

사항을 정함(안 제25조).

고 시

●서울특별시고시제1994-198호
사료성분등록

사료관리법 제12조제1항의 규정에 의한 수입 단마 및 배합사료의 성분등록 사항을 같은 법 제22조제3호의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6. 20

서울특별시장

- 등록업체명 : 한국애완동물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4-8
대표자 : 심세환

등록사료(2종) :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50	수입배합사료	큰개용3호사료(유카누바어덜트)	12개월령이부터	25.0%이상	16.0%이상	1.1%이상	0.8%이상	5.0%이하	6.0%이하
서울-551	수입배합사료	큰개용4호사료(유카누바라이트)	12개월령이상비만및노견	19.0%이상	9.0%이상	1.1%이상	0.8%이상	4.5%이하	5.5%이하

- 등록업체명 : (주) 하조양행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서초구 양재동 377-5
대표자 : 이진명

등록사료(5종) : 프랑스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52	수입배합사료	관광어용사료 (TROUVIT TURBOT SP2. NO.5, NO.7)	성어육성용	56.0% 이 상	12.0% 이 상	1.6% 이 상	1.22% 이 하	1.5% 이 하	10.5% 이 하
서울-553	수입배합사료	관도미용사료 (TROUVIT SEABREAM NC3)	성어육성용	46.0% 이 상	20.0% 이 상	1.4% 이 상	1.05% 이 하	1.5% 이 하	8.0% 이 하
서울-554	수입배합사료	어린광어용사료 (TROUVIT MARINE 000)	부화후약육 일이후부터	57.0% 이 상	18.0% 이 상	1.2% 이 상	1.02% 이 하	1.5% 이 하	9.0% 이 하
서울-555	수입배합사료	육성광어용 1호사료 (TROUVIT MARINE 00, 0, 1)	부화후약육 일이후부터	55.0% 이 상	20.0% 이 상	1.2% 이 상	1.02% 이 하	1.5% 이 하	9.0% 이 하
서울-556	수입배합사료	육성광어용 2호사료 (TROUVIT HD7 TROUVITOL)	비타민을보 충한성장개 선용	48.0% 이 상	12.0% 이 상	2.0% 이 상	1.23% 이 하	2.5% 이 하	11.5% 이 하
3. 등록업체명 : 이현엔지니어링(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마포구 연남동 373-				17 대표자 : 홍순석					
등록사료(1종) : 우크라이나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분자식	
서울-557	수입단미사료	인산3칼슘	배합사료원료용	-% 이 상	-% 이 상	24.0% 이 상	16.0% 이 상	Ca3(Po4)2	
4. 등록업체명 : 송산무역(주) 소재지 : 서울특별시 도봉구 번동 446-13				대표자 : 소병훈					
등록사료(1종) : 미국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58	수입배합사료	어린개용사료	애완견용	27.0% 이 상	10.0% 이 상	2.0% 이 상	0.4% 이 상	2.6% 이 하	7.6% 이 하

5. 등록업체명 : (주) 신도상운 소재지 : 서울특별시 강남구 역삼동 648				대표자 : 김인제					
등록사료(1종) : 일본에서 수입									
등록번호	사료의 종류	사료의명칭	사료의 사용범위	사료의 성분량					
				조단백	조지방	칼슘	인	조섬유	조회분
서울-559	수입배합사료	육성자라용사료	어제중5g부터 200g까지 (특수퐁케이)	48.0% 이상	3.5% 이상	3.0% 이상	1.8% 이하	2.5% 이하	18.0% 이하

●서울특별시고시제 1994-200호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조성계획 변경결정지적승인

1. 서울특별시고시 제1994-47호(94. 3. 5)로 조성계획 변경 결정된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에 대하여 도시계획법 제13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6조 및 서울특별시행정관한위임조례 제3027호의 규정에 의하여 지적승인하였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계도서는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개발과와 관악구 공원녹지과·동작구 공원녹지과에 각각 비치하여 일 반인에게 브킵니다.

1994. 5. 20
서울특별시장

가.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결정 지적승인조서 : 별첨

나. 도시계획시설(보라매근린공원) 조성 계획 변경결정 지적승인도면 : 서울특별시 공원과 및 공원녹지관리사업소 개발과와 관악구 공원녹지과·동작구 공원녹지과에 비치한 도면과 같습니다.

도시계획시설(모라에근린공원) 조성계획 변경결정 지적승인조서(출판료)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지면적 (㎡)		지상면적 (㎡)		건축물(㎡)				공작물		부지면적 (㎡)		지상면적 (㎡)		건축물(㎡)				공작물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계	137,520		140,952.58		46		22,406.45	34,642.95	15		407,529		140,881.58		46		22,345.89	36,345.89	20		시설용 34.57% 잔폐물 5.48%		
기타	소계	45,205		45,205							45,205		45,205										
시설	도로	45,205		45,205							45,205		45,205										
조경	시설	58,075		58,075					7		58,075		58,075						7				
휴양	시설	2,001		2,001	4		1,083.43	2,554.19	1		2,001	1,938	4		1,622.87	1,269.59	1					노인,차안1용 증액	
유아	시설	1,218		1,218							1,218		1,218										
운동	시설	11,179		11,179	2		1,785	2,201.25			11,179		11,179	2		1,785	2,201.25						
교양	시설	16,809		16,809	20		16,394.14	2,384.7	4		16,809		16,809	20		16,396.14	2,423.34	4				건물면적확오정장	
취락	시설	3,972.58		3,972.58	10		635.23	635.23			3,972.58		3,972.58	10		635.23	535.23	3					
관리	시설	2,493		2,493	10		1,905.95	2,913.6	3		2,493		2,493	10		1,506.65	2,964.8	5					
기타	부지	29,674.42									29,674.42												
지 적 승 인 조 서																							
구분	변경 전										변경 후										비고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리치		부도	
계	137,520		140,952.58		46		22,406.45	34,642.95	15		407,529		140,881.58		46		22,345.89	36,345.89	20				
기타	소계	45,205		45,205							45,205		45,205										20
시설	도로	45,205		45,205							45,205		45,205										

구분	시설명	면 적						면 적						비고												
		부호	원	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기타	부호	위	차		부지면적 (㎡)	시설면적 (㎡)	구조	규모	건축물(㎡)	기타						
공 동 사 상	송 회 사	신대방			2,442	2,442							사	신대방	2,442	2,442					유외4면					
	대 니 스 상	395																								
	온 돌 피 기	아	*		1,025	1,025							아	*	1,025	1,025										
	의 23 종	사	*		180	180							사	*	180	180										
양 시 설	라 드 민 년 감	차	*		300	300							차	*	300	300										
	지 이 프 본 점																									
양 시 설	소 계				16,809	16,809									16,809	16,809					16,396.14	27,468.34	4			
	공 회 관	6			3,814	3,814							6		3,814	3,814						3,805.78	6,648.08			
	"	6-1	신대방	(800)	(800)	라면조 슬래브							5-1	신대방	(800)	(800)	라면조 슬래브						(793.39)	(1,487.60)		
	"	6-2	*	(774)	(774)	*							6-2	*	(774)	(774)	*						(773.76)	(1,441.56)		
	"	6-3	*	(2,240)	(2,240)	*							6-3	*	(2,240)	(2,240)	*						(2,238.63)	(3,718.92)		
	청 소 년 회 관	7			8,995	8,995							7		8,995	8,995							8,979.52	16,193.55		
	"	7-1	신대방	(660)	(660)	라면조 슬래브	1층	(657.85)	(657.85)				7-1	신대방	(660)	(660)	라면조 슬래브	1층	(657.85)	(657.85)				(657.85)	(657.85)	
	"	7-2	*	(591)	(591)	*	2층	(590.08)	(590.08)				7-2	*	(591)	(591)	*	2층	(590.08)	(1,180.16)				건물면적학 모로 결정		
"	7-3	*	(591)	(591)	*	*	(390.08)	(590.08)				7-3	*	(591)	(591)	*	*	(590.08)	(1,180.16)				*			

공 고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199호
KS표시정지처분공고

산업표준화법 제25조제1항에 의거 KS표시정지 처분하고 같은 법 시행규칙 제26조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6. 20

서울특별시

- 1. 업체명 : 금강제화(주) 금호동공장
- 2. 대표자 : 지현군
- 3. 소재지 : 서울특별시 성동구 금호동4가 1339

- 4. 규격번호 : KSG 3116
 - 5. 규격명 : 구두
 - 6. 종류등급 : —
 - 7. 표시정지 사유 : 규격미달
 - 8. 표시정지 기간 : 3개월후 별도 해제시까지
부 칙
- 이 공고는 공고한 날부터 시행한다.

●서울특별시공고제 1994-200호
시의회부의안전공고

지방자치법 제40조의 규정에 의하여 시의회에 부의할 안전을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994. 6. 20

서울특별시

구 분	부 의 안 건 명	주관부서
의견청취 (1 건)	1. 도시계획용도지구(도시설계지구) 결정에 관한 의견청취(이태원로 주변)	도시계획과

●서울특별시그시제 1994-206호
자동차등록번호표의용인장치심사
신청공고

자동차등록번호표등의제식에관한고시 제7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서울특별시자동차등록번호표의 용인장치를 심사, 선정하고자 하오니 용인장치를 제작·심사받기를 희망하는 자는 다음 구비요건을 갖추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1994. 6. 20

서울특별시

- 1. 용인장치교봉부고시기준
 - 가. 용인(분양은 무궁화모형)에는 서울특별시(이륜자동차는 관한구)의 지역명이 표시되어야 한다.
 - 나. 용인장치는 용인 후 이를 떼어낼 경우 재사용할 수 없도록 만들어진 구조이어야 한다.

- 다. 용인장치의 규격은 다음과 같다.
 - 1) 용인의 지름 : 20mm 내지 25mm
 - 2) 용인의 높이 : 7mm 내지 10mm
- 라. 용인장치의 볼트 또는 축의 재질은 강철(한국공업규격 일반구조용압연강재 SS34 또는 SS41)이어야 한다.
- 2. 신청대상 : 일정규모의 시설을 갖추고 용인장치를 제작·유통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자
- 3. 제출서류 및 용인장치(제품)
 - 가. 자동차등록번호표의 용인장치심사신청서 1부
 - 나. 용인장치의 분해·조립도가 포함된 제품설명서 10부
 - 다. 교통부고시 용인장치기준에 의한 제품에 대한 시험성적서 및 시험·분석 성적서 각 1부
- * 1994. 1. 1 이후 국립공업기술원장 또

는 생산기술연구원장 발행 시험(분석) 성적서 원본
 라. 봉인장치(제품) - 규격별 각 10조
 4. 제출기한 : 1994. 7. 3까지
 5. 신청서배부 및 제출처 : 서울특별시 교통기획과
 6. 기타 : 봉인장치심사신청에 관하여 문의 사항이 있으시면 서울특별시교통기획과(773-6154~5)로 문의하시기 바라며, 제출된 서류 및 제품은 반환하지 않습니다.

구 고 시

● 송파구고시제94-28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의 규정에 의하여 민영주택 건설사업 계획을 승인하고 동법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거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6. 20
 송 파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가락동 제7지역주택조합 외 17개조합 대표 황보연 외 2,047명
3. 사업시행지의 위치 및 규모
5. 도시계획시설(도로) 결정

- 가. 위치 : 송파구 가락동 140번지 1필지
- 나. 대지면적 : 55,645.06㎡
- 다. 건축연면적 : 246,575.83㎡
- 라. 규모 : 아파트 9~24층 14동 2,064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4. 6~1996. 6

● 성동구고시제1994-41호

민영주택건설사업계획승인 주택건설촉진법 제33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45조제5호의 규정에 의거 민영주택건설 사업계획을 승인하고 같은 법 시행령 제32조의5 규정에 의하여 다음과 같이 고시합니다.

1994. 6. 20
 성 동 구 청 장

1. 사업명 : 민영주택 건설사업
2. 사업주체 : 두산건설(주) 대표 문승영
3. 민영주택 건설사업 개요
 - 가. 위치 : 서울 행당동 191-7 외 4필지
 - 나. 부지면적 : 5,694.76㎡
 - 다. 건축연면적 : 28,223.56㎡
 - 라. 규모 : 아파트 10~25층 2동 251세대 및 부대복리시설
4. 사업시행기간 : 1994. 6~1996. 6

구분	등급	유별	폭원 (m)	연장 (대)	시 점	종 점	비 고
결정	소로	3	6	81	행당동 191-8	행당동 191-10	* 민영주택건설사업 부지 외곽도로 신설

● 중구고시제1994-19호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실시계획 변경인가
 1. 서울특별시 중구고시 제8호(92. 6. 8)로 도시계획사업(전기공급설비) 시행인가된 중구 홍인동 13-1 신당동 변전소에 대해

도시계획법 제25조, 동법시행령 제6조, 제 27조2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도시계획 사업(전기공급설비) 실시계획을 변경인가 하고 동법 제26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2. 관제도서는 서울특별시 중구청 도시정비

과에 비추하여 이해한지언에게 보입니다.
1994. 6. 20
중 구 청 장

가. 사업개요

- 1) 사업의 종류 및 명칭
도시계획사업(전기동급설비)-154KV
신광동변전소 건설사업
- 2) 사업시행지: 중구 용인동 13-1
- 3) 시행면적: 3,296㎡(전용지하 3·4·5층)
- 4) 시행기간: 1992. 6. 8~1994. 6. 31
- 5) 시행처: 서울시 강남구 삼성동 167
한국전력공사 안양차

나. 변경내용

○시행기간

당초: 1992. 6. 8~1994. 6. 30
변경: 1992. 6. 8~1994. 12. 31

○기타사항: 변경 없음.
다. 변경사유

○건축공정 및 변전 주차재 남기 일정 상 당초 준공예정기한보다 늦어져 결 대 공기 부족으로 인한 단순 기간 연 장

구 공 고

●중구공고제1994-122호

도시계획사업시행(공원조성)사업자지정
도시계획법 제23조 및 도시공원법 제6조 제1항의 규정에 의거 도시계획사업(공원조 성) 시행자를 지정하고 공고합니다.

1994. 6. 20
중 구 청 장

사 업 의 종 류	사 업 의 영 칭	사 업 의 위 치	사 업 의 시행자		사 업 의 면적 또는 규모	사 업 의 착수 및 준공 예정일
			법인회 명 칭	주 스 대표이사		
도시계획 사 업 (공원조성)	촌 련 둔 공원조성	서울특별시 중구 을지 로5가 40-3	한국전 력(주)	강남구 삼성 동 87	면적: 16,734.5㎡ 사업비: 1,969,000천원	착공: 1994. 6. 20 준공: 1996. 12. 20

○공원조성 관계도서는 중구청 공원녹지과
에 비치

○공고기간: 94. 6. 9~6. 23(14일간)

●서초구공고제1994-183호

허권부지점용허가
수행법 제25조지정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4조제1항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허권부 지, 구거부지 점용허가허가 동법시행령 제22조 및 공유수면관리법 제6조 시행령 제1조 서울특별시행정권한위임조례에 의하 여 이를 공고합니다.

1994. 6. 20
서 초 구 청 장

인가일자	허 가 번호	소 계 지	지 부	중 용 면 적	허가기간	점 용 목 적	주 허 가 과	
							주 소	성 명
94. 6. 10	94 사-22	서초구 우면 동 143	하천	120㎡	94. 6. 1 94. 10. 31	현장사무실및 차제적저장	서초구 서초 동 1577-4	동아종합 환경(주) 박찬주

●성북구공고제 1994-117호
전문건설업면허취소공고
 건설업법 제52조제1항제1호 규정에 의거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를 취소하였기
 1994. 6. 20
 성 북 구 정 장

면 허 취 소 내 역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면 허 취소일자	취 소 사 유
토공 92-02-164	(주)대의 종합건설	김영수	성북구 동선동3가 243	94. 6. 14	건설업법 제7조 위반(사무실 미보유 및 출자취수미달)

○공고기간 : 94. 6. 14~94. 6. 28(2주간)
 아래와 같이 전문건설업 면허실효 처분하였
 기에 이를 공고합니다.
 1994. 6. 20
 서 초 구 정 장

●서초구공고제 1994-190호
전문건설업면허실효
 건설업법 제6조제4항의 규정에 의하여

업종 및 면허번호	상 호	대표자	소 재 지	면허유효 기 간	면허실효사유	면허실효일
의장 91-서울-01-81	금상에어시스 텔(주)	이훈명	서초구 1535-9	91. 5. 31~ 94. 5. 30	면허미정신으 로 효력상실	94. 5. 31
의장 91-서울-01-146	빅건축(주)	박승철	서초동 1632-1	"	"	"
의장 91-서울-01-252	(주)세대디자 인	고영윤	서초동 1431-6	"	"	"
의장 91-서울-01-313	태산전영(주)	김진성	방배동 450-2	"	"	"
의장 91-서울-01-373	우드하우스	손기현	서초동 1317-7	"	"	"
의장 91-서울-01-389	원명건설(주)	구원희	방배동 980-26	"	"	"
의장 91-서울-01-468	베코인테리어	신승길	서초동 1364- 54	"	"	"
의장 91-서울-01-489	(주)도시공영 환경미술원	김동균	서초동 1605-5	"	"	"

사업소고시

●한강관리사업소고시제68호
하천점용허가

하천법 제25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여 아래와 같이 하천의 점용을 허가하였기 같은 법 시행령 제22조에 의거 이를 고시합니다.

1994. 6. 20

한강관리사업소장

허가연월일	위 치	지목	점용면적 (㎡)	점용목적	점용기간	허가권 받은 자	
						주 소	성 명
94. 6. 10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선 (한강)	하천	258	노후 수도관 보수	1994. 6. 10~ 1994. 6. 20	영등포구 여의도동 85-1선	(주)세모 박 명 권

정정게재

서울시보 제1827호(94. 6. 7)자에 게재된 "공문시행" 내용 중 일부 착오(제목: 시행문의 시보제재의외) 지적되어 다음과 같이 정정합니다.

1994. 6. 20

서울특별시장

제목: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 개정공보

1. 서울 600년사업 추진본부의 운영강화 지침에 따라 기구가 통합, 인선임에 따라
2. 서울특별시 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을 개정, 따로붙임과 같이 통보하니 업무에 참고하기 바람.

※ 이 내용에 관한 서행문은 따로 보내지 아니함.

따로붙임: 서울특별시기관기호및수신처기호규정 1부

인사발령

5급 기술직공무원 전보 및 인사교류

●1994년 6월 10일자

영 제285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직	
			부 서	직 급
1	권기철	세종문화회관 근무를 명함	동대문구 건축과장	지방건축사무원
2	박성태	동대문구 전출을 명함	세종문화회관	〃

5급공무원 징계

●1994년 6월 13일자

영 제286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홍사중	지방공무원법 제69조제1항 제1, 2호 규정에 의하여 "진척"에 처함	새종문화회관	지방별정직 5급 상당
2	신정범	"	"	"

6급 기술직공무원 파견

●1994년 6월 13일자

영 제287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윤영진 391228-1052714	서울지방검찰청 파견근무 (94. 6. 13~95. 6. 12)	내무국	지방보건의사

기능직공무원 진보

●1994년 6월 13일자

영 제288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신은주 870719-2036314	종합전선본부	지하철 전선본부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기능직공무원 면직

●1994년 6월 13일자

영 제289호

연번	성명	발령내용	현직	
			부서	직급
1	이용태 670414-2388417	원에 의하여 그 직을 면함	회계과	지방사무보조원 (필기10등급)
2	최준호 740217-1455011	"	중앙하수처리(사)	지방전기원 (10등급)

5급 기술직공무원 복직

●1994년 6월 14일자

영 제292호

연번	성 명	발령내용	현 직	
			부 서	직 급
1	이 성 학 511125-1550913	복직을 명함 지하철건설본부 근무를 명함	지 라 천 건설본부	지방도복 사무관

공무근외여행 명령 통보

●1994년 6월 10일자

여 행 가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행목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상 수 도 사업본부	시설 4급 (급수부장)	전기택	35. 7. 25	미 국 캐 나 다	94. 6. 19 ~ 6. 27 (9일간)	시 비 (\$9,802)	94 국제 수도회의 연차총회 및 전시 회 참가
	수도토목 7 급	한명석	56. 2. 20				
	기업행정 7 급	윤태경	56. 3. 7				
기획담당관	행정 4급 (기 획 담당관)	김상돈	50. 5. 20	싱가포르 프 랑 스 스 위 스	94. 6. 22 ~ 7. 3 (12일간)	시 비 (\$19,282)	주요 도시의 국제 화 서책, 컨벤션센 터, 델리포트 등 국제업무 기능사 설 전략
국제교육과	행정 4급 (국제교육 과 장)	김병일	57. 3. 4	독 일 일 본			
도시계획과	토목 5급 (중합계획 계 장)	송득범	56. 1. 8				
내 부 국 총 부 과 (수도권배 급지운영관 리조합 파 견)	시설 4급 (사무국장) 토목 6급	이원걸	35. 8. 12	미 국 일 본	94. 6. 20 ~ 6. 30 (11일간)	선진인지 니 어 링 (주) 부담	선진국의 폐기물 처리시설 및 운영 체계에 대한 전략

공무국외여행 명령 통보

●1994년 6월 10일자

여 행 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도시경관과	행정 5급	류배옥	52. 8. 25	미 국 일 본 홍 콩	94. 6. 21 ~ 7. 1 (11일간)	시 비 (\$7,360)	내무부 계획에 의 한 선진외국 옥외 광고물 관리제도 및 설치실태 견학 ·연수
	행정 6급	김정수	54. 3. 29				
강 서 구 (수도권배 립지운영관 리조합 파 견)	행정 7급	박찬용	51. 10. 19	독 일 프 랑 스 이탈리아 스 위 스	94. 6. 19 ~ 6. 28 (10일간)	수도권에된 자운영관리 조합비 조함비	외국 선진배립장 견학에 따른 매립 및 소각시설에 관 한 자료수집
지 하 철 전 설 본 부	기재 6급	임경남	62. 2. 27	스 웨 덴	94. 6. 13 ~ 6. 21 (9일간)	시 비 (\$6,466)	DRIVING GEAR UNIT 제작검사 및 품질관리 확인
	공사 3급	강완식	38. 9. 12				
노 정 과	행정 7급	김홍기	50. 7. 9	태 국	94. 6. 27 ~ 7. 2 (6일간)	시 비 (\$1,317)	한국노총 서울지 역 본부 주관으로 노사 모범사원 해 외연수 참가
세 정 과	행정 5급 (평가개장)	권오도	46. 7. 30	프 랑 스	94. 7. 15 ~ 7. 22 (8일간)	시 비 (\$13,168)	파리시와 파리-레 지옹의 지방세 은 영현황 견학 및 자료 수집
	세무행정 6 급	윤기명	48. 3. 26				
세무지도과	세무행정 6 급	이정엽	46. 3. 4				
예산담당관	행정 7급	사덕영	50. 11. 16				
지 의 회 사 부 처	행정 4급 (의 정 담당관)	이상돈	38. 12. 28	중 국	94. 6. 20 ~ 6. 30 (11일간)	시 비 (\$3,871)	시의회위원의 중국 김림성 인민대표회 상무위원회 및 연변 조선족 자치구 인민 대표대회 상무위원 회 초청 중국방문단 수행보좌
	별정 5급 (비서관)	박용훈	57. 12. 4				
	행정 7급	이상림	50. 4. 9				
기획관리실	별정 2급 (정 책 기획관)	강홍변	45. 1. 15	그 리 스 터 키	94. 6. 15 ~ 6. 29 (15일간)	시 비 (\$3,350)	올림픽 100주년기 년 세미나참석 및 자매도시 방문

여 행 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지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청 소 사 업 본 부	행정 5급 (장비관리 과 장)	이동오	54. 11. 1	미 국	94. 6. 24 ~ 7. 7 (14일간)	시 비 (\$ 3,914)	내부부 세획으로 지방의 국제경쟁 력 강화를 위한 선진 외국 지방경
주 차 계 획 담당 관	도복 7급	임용택	62. 3. 17	영 국	94. 6. 24 ~ 7. 7 (14일간)	시 비 (\$ 5,920)	영사래 수집을 위 한 출장

공무국외여행 명령 통보

●1994년 6월 13일자

여 행 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지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최 수 과	시설 4급 (최수과장)	임동국	49. 1. 19	일 본	94. 6. 20 ~ 6. 24 (5일간)	시 비 (\$ 1,466)	제17회 한·일하천 및 수자원 기술협 력회의 참가
기 획 관 리 실 부 자 관 리 담당 관	행정 2급 (제 정 기 획 관)	진영호	44. 3. 6	미 국	94. 6. 20 ~ 7. 7 (18일간)	시 비 (\$ 42,890)	양키랜드 발행에 따른 제반절차 이 행과 인수계약 제 결, 자료납입등 사 후 조치를 위한 국외출장임
"	행정 4급 (부자관리 담당 관)	김경규	51. 1. 21				
"	행정 5급 (제정기획 지 장)	조인동	56. 7. 25				
"	행정 7급	전제훈	55. 3. 23				
지 하 철 건설 본 부	행정 5급 (재정과장)	류병찬	41. 12. 16				
강 남 구	행정 2급 (구청장)	이광우	35. 3. 25	중 국	94. 6. 20 ~ 6. 25 (6일간)	자치구비 (\$ 1,658)	강남구의 중국대 천시 국제도시간 결연 조인식 참석

공무국외여행 명령 변경 통보

●1994년 6월 13일자

	여 행 자				여행국	여행기간	여행경비	여 행 목 적
	소 속	직 급	성 명	생년월일				
변 경 전	민 방 위 국	별정 2급 (민 방 위 국 장)	박영호	36. 8. 18	미 국 일 본	94. 6. 13 ~ 6. 21 (9일간)	시 비 (\$ 7,542)	94 국제교류사 업 계획에 의 거 외국 민방 위세도 비교 시찰
	운 영 과	행정 5급 (테 롱 교육장장)	조성궁	50. 5. 8				
변 경 후	"	"	"	"	"	94. 6. 16 ~ 6. 24 (9일간)	"	"